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56

발의연월일: 2020. 7. 2.

발 의 자:태영호·강기윤·윤재옥

이명수 · 서범수 · 김정재

정희용 · 김희곤 · 김기현

송언석 · 임이자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거나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지연하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이 이러한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예술인의 예술창작활동이나 정당한 이익을 해치는 불공정행위는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이러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불공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가 아닌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여 예술인에 대한 불공정행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아울러 현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예술인 권익보호를 위한 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에 교육 프로그램의 홍보를 추가하고자 함(안 제17조제2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 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9호 중 "운영"을 "운영 및 홍보"로 한다.

제1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8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재단의 사업) ① 재단은	제10조(재단의 사업)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예술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9
교육 프로그램 <u>운영</u>	<u>운영 및 홍보</u>
10. ~ 12. (생 략)	10. ~ 1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벌칙) (생 략)	제17조(벌칙) <u>①</u>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u> <신 설></u>	②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
	명령을 위반한 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제18조(과태료) 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1의4. (생 략)	1. ~ 1의4. (현행과 같음)
2.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	<u><삭 제></u>
명령을 위반한 자	
3의2.·4. (생 략)	3의2.・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